

◇ 자 료

書雲觀志의 翻譯, 註, 解説 4. 勸課・褒貶・坐衙

俞 景 老
서울대

緒 論

여기서도 前番의 (1)官職 (2)官廨 (3)薦舉 (4)科試 (5)取才에 이어서 (6)勸課(勤務를 勸獎하는 것) (7)褒貶(勤務成績에 따른 褒賞과 貶罰) (8)坐衙(日常勤務에 있어서의 諸般禮式)에 대하여 翻譯과 註 그리고 若干의 해설을 가하기로 한다.

1. 第六篇 勸課

1) 翻譯과 註

天文을 肄習하는 文臣을 領觀象監事가 抄啓하여 (通訓¹⁾ 大夫 以下の 材望者²⁾를 抄啓한다에 말하기를 星變이 있으면 番을 나누어서 宿直하여 確實하고 正確한가를 헤아리고 물어서 혹은 殿講³⁾하거나 혹은 官에 命하여 賞罰을 講究한다.

- 雲臺⁴⁾官으로 勤苦함이 특히 甚했던 者는 東班이나 西班으로 銓衡하여 가려서 拔擢해서 쓴다.
- 日月食述者⁵⁾에게는 別途로 西班遞兒 하나를 給眞한다.
- 三學의 天文과 曆籌를 아울러 通한 者는 別途로 顯官⁶⁾에 叙하여 바로 出仕시킨다.
- 每年마다의 都目 때에는 觀象監에서 오래 勤務한 人員은 吏曹로 公文을 올려서 轉勤시킨다. (모두 大典通邇에 나와 있다)

天文學의 三曆官과 修述官 및 前衙으로 科舉(雜科)에 合格하고 재주가 있어서 가르칠 만한 者 30名을 選擇하여 每月 本學의 訓長과 訓副가 「數理精蘊」과 「曆象考成」을 가지고 訓課한다. 命課學에서는 每月 該學의 訓長이 「協吉通義」를 가지고 廳中の 6名에게 訓課한다. 그리고

1) 通訓: 通訓大夫 正三品 堂下官.

2) 材望者: 適任者로 追薦된 사람이란 뜻으로 생각된다.

3) 殿講: 임금의 친히 講을 받는 것.

4) 雲臺: 觀象監 또는 書雲觀의 別稱.

5) 日月食述者: 日食·月食의 計算과 관측을 맡은 者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 顯官: 여기서는 實職을 말하는 것 같다.

各 試驗에서의 그 姓의 等數를 井間⁷⁾ (方眼紙) 記錄하였다가 四季節의 朔이 되었을 때 提調가 試驗하여 取하는데 3個月間의 畫數를 統計하여 各各 3名을 골라서 差를 두고 施賞한다. 天文學에서는 年末에 12個月間의 畫數를 모두 計算하여 三曆官中에서 首席을 차지한 者는 兼敎授 자리가 비기를 기다렸다가 채워서 任命한다. (待窠填差)⁸⁾ 修述官中の 首席者는 三曆官의 자리를 기다렸다가 補充任命한다. 前銜中の 者席者는 修述官 자리를 기다렸다가 補缺하여 任命한다. (자리에 任用하는 것은 一次는 畫數를 計算하여 任用하고 一次는 取才로 任用하여 年末에 都講⁹⁾ 한 後에 首席者(居首者)¹⁰⁾를 取하여 公文을 만들어 交付한다. 計算된 畫數가 次席인 者(當次者)¹¹⁾는 首席者에 따라 先後의 차례대로 채워서 任用한다. 取才의 次席者는 자리가 많아도 모두 取才로서 메꾸어서 任用한다. 年末의 都講도 역시 太學의 陞補¹²⁾의 例에 따라서 當年에 磨勘하지 못하면 (人事移動을) 施行하지 않는다)

2) 解説

두 節로 나누어서 썼는데 그 1節에는 觀象監 職員의 勤務 成績에 따른 優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特別事項을 고려하였다.

1) 星變이 있을 때에 分番宿直하여 觀測을 하게 하는데 그 正確度を 評價하여 賞罰을 施行한다는 것,

2) 勤務에서 特別히 勤苦가 큰 者에 대한 拔擢任用.

3) 日月食述者에 대한 西班牙 一 人 一 席의 特給,

4) 三學에서 天文과 曆籌의 兩者를 兼해서 精通한 者에 대한 別도의 顯官任用,

5) 每年 都目 때에 久勤人員을 禮曹에서 吏曹로 轉勤시킨다는 것.

2節에서는 各學에서의 修鍊方法과 거기서의 考課와 成績에 따른 昇進의 具體的인 규칙을 記述하고 있다.

現代의 政府에서의 制度보다 오히려 더 앞서 있는 面이 있고 더 철저했던 感이 없지 않다. 技術官이라서 그것이 더 쉬워서 그러한 制度가 가능했는지는 모르나 그 實効에 대한 것은 別도의 研究가 필요할 것이다.

2. 第七篇 褒貶

1) 翻譯과 註

從前의 貶目¹⁾ (貶坐目)은 다만 上, 中, 下로만 썼었는데 正宗 己巳年(1785)에 王命을 받들어 비로소 題目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領觀象監事 鄭存謙의 奏로 因하여 이름이 觀象

7) 井間: 方眼紙. 모눈종이

8) 待窠填差: TO가 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빈 자리가 나면 채워서 任用하는 것.

9) 都講: 年末의 1年동안의 點數를 通計하는 것.

10) 居首者: 成績이 가장 높은 자.

11) 當次者: 성적이 둘째로 높은 자.

12) 陞補: 缺員을 메꾸어 升進시키는 것.

1) 貶目: 貶坐目으로 官員을 評定하여 매기는 評定表.

監의 籍에 오른 者는 前銜²⁾ 時任³⁾을 莫論하고 모두 貶坐⁴⁾에 參與하게 되었다. 말은 責務(職事)가 없으면 題目만 써 넣는다. 職責이 無實에 가깝고 또 人員이 많으면 너무 번거로우므로 다만 任官에 대해서만 題目에 職責을 써넣는 것으로 法式을 定했다. (任官은 各學의 兼教授를 말한다.)

- 時任의 東班遞兒는 모두 禮曹의 貶坐에 參與하고 各學의 兼教授는 兵曹의 褒貶에 參與한다. 褒貶日⁵⁾에는 實軍職으로서 나아가 參與한다. 遞兒教授는 本來 兼教授를 바꾸어 만든 자리이므로 역시 같다.
- 中間 成績의 사람(居中者)은 該當等の (當等)⁶⁾ 祿取才⁷⁾ 試驗에는 應試하지 못한다. 兼教授取才는 만약 擬望⁸⁾에 올랐으면 자리가 멀고 가깝고를 莫論하고 해당等에서 差出⁹⁾된다. 그러나 안의 자리(內)¹⁰⁾는 허락하지 않는다. 教授와 訓導의 久任과 軍職에 輪番으로 任用하는 자리는 모두 候補者 推薦을 참조하지 않는다. 三曆廳의 修述官이나 七政의 推步官이나 監印官과 監董官의 무리에 이르러서는 連中者에도 不拘하고 推薦名單을 참조하지 않는다. (本廳이나 三曆廳의 任官도 역시 推薦을 참조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中間成績인 경우에는 時任者는 所帶¹¹⁾를 減下하고 다만 계속 勤務케 하여 一都目¹²⁾이 지난 다음에야 試驗을 보게 해서 고른 뒤에 推薦해서 任用한다. (다음 해에 任務를 맡 修述官, 推步官, 監印官, 監董官을 今年 十月에 미리 任用하는 자는 一都目以內에 填差¹³⁾한다) 成績이 下位에 屬하는 者는 法典에 의하여 罷職시키고 2년이 지난 다음에야 復職시킨다. 그러나 비록 容赦받고(遇赦)¹⁴⁾ 罪를 씻어주더라도(蕩滌)¹⁵⁾ 前의 經歷은 계산에 넣지 않고 다만 復屬시키기만 한다.
- 한번은 (一中)¹⁶⁾ 勿論이고 계속해서 合格에서 下位の 成績을 받은 者라도 蕩滌의 恩典이 있다면 하나같이 調用¹⁷⁾한다. 春夏等¹⁸⁾에서 中位에 든 者는 비록 이미 蕩滌이 있었다 해도 秋冬等에서 또 中位가 된다면 역시 連中下位로 施行한다.
- 兼教授 外에 別取才¹⁹⁾와 聰敏의 考講은 이미 祿取才의 경우와는 달라서 一中者도

2) 前銜: 여기서는 觀象監員의 職位의 하나.

3) 時任: 現職에 있는 사람.

4) 貶坐: 官員의 成績을 評定하는 會議.

5) 褒貶日: 官員의 褒貶(成績)을 評定하는 날.

6) 當等: 春等이든 秋等이든 바로 그때에 해당하는 等を 가리킨다.

7) 祿取才: 職銜만 있고 祿俸이 없는 者를 祿俸이 있는 職으로 옮기기 위해서 施行하는 取才 試驗.

8) 擬望: 3人의 候補者를 推薦하는 것.

9) 差出: 任用하기 위하여 뽑아내는 것.

10) 內: 확실한 뜻은 이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11) 所帶: 현재 띠고 있는 任務 職責.

12) 一都目: 6個月間을 말한다. 6月과 12月, 즉 6個月만에 한번씩 官員의 成績을 評價해서 轉任·陞遞시킨다.

13) 填差: 자리가 나면 채워서 任用하는 것.

14) 遇赦: 特使를 만난다는 말.

15) 蕩滌: 罪나 過誤를 없던 것으로 씻어내는 것.

16) 一中: 한번의 試驗에 合格한 사람.

17) 調用: 官員으로 登用하는 것.

18) 春夏等: 俸祿이나 그 밖의 일로 1년에 區間을 정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春夏秋冬으로 等を 區分한 것.

19) 別取才: 別途로 取才하는 것.

試驗을 보게 한다. 이때 聰敏은 비록 優等의 成績이라도 그 次席으로 降等해서 부친다. 優等者는 司勇에 부치고 그다음 者는 散料²⁰⁾에 부친다. 連中한 者는 말할 것도 없다.

五月과 十一月의 下旬에는 褒貶掌務官 4員을 差出한다. (天文學에서는 2員인데 1員은 判官이 의례적으로 兼務하고 1員은 敎授와 訓導가 輪番으로 差出되고 地理學과 命課學에서는 各各 1員씩인데 該學의 敎授와 訓導 또는 祿官이 輪次的으로 差出된다. ○褒貶色書員²¹⁾은 3人인데 그중의 1人은 庫直이 된다) 마찬가지로 各學의 任官과 禁漏掌務官이 實軍職을 取考²²⁾한다. 王의 哉可(下批)²³⁾가 내리면 모두 가서 王께 肅拜한다. 以上の 實任官員과 前銜과 權知의 實任은 (時任의 東班正職도 勿論이다) 長單子²⁴⁾ 8件을 다시 써서 낸다. (天文學敎授나 訓導 外에 當該官과 禁漏官은 各各 2件을 써서 모두 8件이 된다. 3件은 미리 領事와 提調에게 提出하고 3件은 開坐日²⁵⁾에 또 領事와 提調에게 提出해서 殿最²⁶⁾ 評點에 對備하고 1件은 禮曹에 보내고 1件은 本觀象監에 備置한다) 그믐날 밤 子時(子夜)²⁷⁾가 되면 當該掌務官이 各各 1件씩을 領事와 提調에게 提出하고 임금에게 坐衙日을 上奏한다. (領事에게 事故가 있을 때는 바로 事故를 報告한다. 輔國²⁸⁾이 提調를 兼帶했을 때에는 障礙가 있어도 行禮하고 그 變通을 王께 報告한다. 議政²⁹⁾들은 이에 關係하지 않는다) 開坐하는 禮(兩坐禮)³⁰⁾가 끝나면 掌吏³¹⁾가 長單子를 各各 1件씩 미리 領事와 提調의 冊床위에 提出하고 또 갖가지 事故單子(雜頃單子)³²⁾ 1件을 만든다. (半折紙로 帖을 만든다) 不仕受由³³⁾나 出使日淺等の 事故가 있는 者를 抄書하여 考閱에 便하게 한다. 그리고 혹은 潛行³⁴⁾하여 밖에 있거나 혹은 病이 있어서 參坐³⁵⁾하지 못한 者가 있으면 一一이 點檢하여 記錄과 對照(照錄)하여 이것이 끝나면 提調가 領事의 座前에 앉아서 頃單子³⁶⁾에 記錄된 序列(殿最)을 點考하여 封하고 署印(封署)³⁷⁾하면 (外任으로 交代로 出使하여 일을 마치고도 오랫동안 올라오지 못한 者와 私事로 말미를 얻었다가 期限이 지난 者와 일에 따라 곳에 따라 나오지 않은 자는 그밖의 例에 따라 中位者로 해서 選考한다) 禮曹의

20) 散料: 俸祿을 여러번으로 나누어 주는 것.

21) 褒貶色書員: 褒貶의 査定結果를 記錄하는 官員인 것 같다.

22) 取考: 査定한다는 뜻.

23) 下批: 王의 裁可.

24) 長單子: 長의 뜻을 알 수 없으나 査定用으로 提出하는 單子이다.

25) 開坐日: 褒貶을 査定하는 會議를 여는 날.

26) 殿最: 殿은 꼴찌, 最是 첫째의 뜻으로 成績의 次例를 말하는 것.

27) 子夜: 밤 子時. 夜半.

28) 輔國: 輔國崇祿大夫의 略稱.

29) 議政: 三政承을 말하나 여기서는 觀象監의 領事인 領議政을 除外한 左右議政으로 해석된다.

30) 兩坐禮: 褒貶의 査定會議의 開會式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실질적으로는 그 會議 全體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

31) 掌吏: 管掌(瑄管)하는 吏屬.

32) 雜頃單子: 이것저것 雜多한 事故가 있는 사람의 單子.

33) 不仕受由: 私事로운 일로 出仕하지 못할 理由를 달아서 一定期間에 말미를 얻는 것.

34) 潛行: 申告없이 자리를 뜬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35) 參坐: 開坐에 參席하는 것.

36) 頃單子: 事故가 있는 사람의 單子.

37) 封署: 封하고 署名封印하는 것.

褒貶일이 되면 本曹의 當上官들이 親히 封署를 받아서 成積評價를 매겨서 王께 올린다.

2) 解説

褒貶도 역시 두 節로 되어 있다. 1節에서는 貶坐의 構成과 原則 등을 記述했는데

- 1) 時任은 모두 貶坐에 參與하고 職責이 없는 사람은 任員만을 적어 넣는다.
- 2) 東班遞兒는 禮曹, 兼教授와 遞兒教授는 兵曹의 褒貶에 參與한다.
- 3) 居中者는 當等の 祿取才 試驗을 허락하지 않는 등 兼教授取才, 教授, 訓導, 軍職, 輪差의 자리, 三曆廳의 修述官, 七政推步官, 監印官, 監董官 등의 許試와 擬差의 規則을 記述했고 居下者는 覆職시키고 二年을 經過하기 前에는 任用하지 않는다는 規定을 說明했다.
- 4) 蕩滌에 대한 規定을 말했다.
- 5) 別取才聰敏에 대한 特別規定을 說明하고 있다.

2節에서는 都目에 對備하는 5月과 11月에 實際로 施行되는 褒貶의 掌務官의 差出任命과 貶坐의 開坐의 前과 當日에 行하는 書類와 節次에 대하여 仔細히 記述하고 있다. 여러가지 事故에 대한 具體的인 對備에 대하여도 言及하고 있다.

結局 褒貶이란 주로 監內에서 實施하는 各種考課에서의 成績에 의하여 陞進, 降等 또는 罷職 等임을 알 수 있고 相當히 複雜한 規定에 의하여 施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가 반드시 技術職의 能力發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疑問이 없을 수 없다.

3. 第八篇 坐衙¹⁾

1) 翻譯과 註

堂上官以上이 出勤執務하는 날(坐起²⁾之日)에는 三學의 堂上官, 堂下官이 會衙³⁾한 後 (掌務書員⁴⁾이 事前에 三學의 官員에게 疑定節次(目)를 告하고 禁漏廳⁵⁾에 公文을 보낸다. 大小의 坐起가 모두 같다) 書員을 시켜서 一, 二의 두 提調를 請해 오게 한다. 提調가 먼저 이르면 掌務書員은 堂上官以下가 恭敬하여 맞이한다는(祗迎)⁶⁾ 뜻을 傳해 올린다. 各學의 堂上官은 三門 안 西쪽 層階 위에 서고 兼教授가 그 다음에 선다. 祿官과 任官은 三門 안 東庭에 서서 一時에 다같이 몸을 굽혀서 敬意를 表한다. (鞠躬)⁷⁾ 提調는 堂上官이 鞠躬하는 곳으로 몸을 돌려 向하며 答禮(答揖)를 한다. (掌務書員은 回班⁸⁾하시라는 뜻을 稟하고 먼저 回班席⁹⁾을 設置한다. 答揖하는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大廳으로 올라간다. 遞兒掌務官¹⁰⁾ (지금은 久任)이 領事를 모셔온다. 領事가 이리

- 1) 坐衙: 官衙의 首官 또는 堂上官 以上の 出勤執務를 말하는 것. 여기서는 領事, 提調가 나와서 執務하는 것을 가리킨다.
- 2) 坐起: 堂上官 以上の 出勤.
- 3) 會衙: 官衙에 모여서 議論하는 것.
- 4) 掌務書員: 坐衙 때의 行禮를 擔當한 官員.
- 5) 禁漏廳: 禁癘 즉 漏刻의 일을 보는 官廳.
- 6) 祗迎: 공경하여 맞이하는 것.
- 7) 鞠躬: 敬意의 표시로 몸을 구부리는 것.
- 8) 回班: 자리로 돌아가는 것.
- 9) 回班席: 돌아가 앉을 자리.
- 10) 遞兒掌務官: 遞兒인 掌務官.

면 掌務書員은 나가 提調以下가 祇迎할 것이라는 것을 稟한다. 提調는 大廳 앞의 西階 위에 서고 堂上官은 三門 안 東庭에 서고 兼教授는 三門 밖의 西庭에 서고 祿官과 任官은 三門 밖의 南庭에 서서 다같이 鞠躬한다. 領事는 堂上官이 鞠躬하는 곳을 돌아보고 손을 들어 答禮하고 提調의 鞠躬處로 轉向하여 鞠躬하여 答禮한다. 그리고 大廳으로 올라간다. 提調는 안 보이는 곳으로 避한다. 領事는 公服¹¹⁾을 입고 의자에 앉는다. 掌務書員이 꿇어 앉아서 提調에게 行禮¹²⁾하기를 請한다. 즉 提調에게 앞으로 나가 再拜하기를 請한다. 提調의 再拜에 대하여 領事는 의자에서 내려서 바로 答拜한다. (一·二提調가 同品¹³⁾인 경우에는 같이 行禮한 後에 같이 자리에 서서 東向하여 再拜한다. 同品이 아닐 때는 一提調¹⁴⁾가 혼자서 먼저 行禮하고 자리를 찾아서 선다. 二提調¹⁵⁾는 領事와 一提調 앞으로 가서 차례로 行禮한다) 領事와 提調가 모두 의자에 앉는다. (一·二提調가 一·二品으로 差가 있으면 東壁과 西壁으로 나누어 앉고 다만 同品으로 正從¹⁶⁾의 差만이라면 같이 西壁에 앉되 二提調가 조금 뒤에 앉는다) 掌務書員이 꿇어 앉아서 六行(한)單子¹⁷⁾를 읽고 먼저 領事 앞을 향하여 再拜하고 各廳의 參謁¹⁸⁾을 稟한다. 그리고 一·二提調 쪽으로 돌아 向하여 똑같이 한다. 三學의 堂上官을 引導하여 西楹¹⁹⁾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再拜시킨다. 領事에게 禮하면 領事는 아래로 내려와 바로 손을 들어 答禮한다. 一二提調에게 回班의 行禮를 하면 一二提調는 역시 위와 같이 答禮한다. 또 各學의 兼教授, 教授, 訓導, 祿官, 前銜, 權知를 引導하여 次例로 行禮를 마친다. (書員은 階上에서, 使令은 階下에서 再拜한다) 또 私禮²⁰⁾를 행한다. 領事が 時服²¹⁾으로 자리에 앉는다. (格式을 차리지 않고 便한대로 앉는다. 平排坐²²⁾) 掌務書員이 무릎을 꿇고 提調의 行禮를 告한다. 一·二提調가 앞으로 나아가서 禮를 행한다. 領事는 몸을 숙이고 손을 들어서 答禮하고 各各 자리에 앉는다. 掌務書員이 무릎꿇고 各廳의 參謁을 告한다. 堂上官以下를 인도해서 차례로 行禮한다. (堂上官의 行禮 때에는 領事와 提調는 손을 들어서 答禮한다) 行禮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다. (領事が 退勤할 때) 提調가 祇送²³⁾하는 節次도 祇迎할 때와 같다. 또 一·二提調에 대하여도 역시 그 節次대로 한다. 만일 提調가 먼저 나갔으면 堂上官 以下에 대하여는 祇送의 禮를 하지 않는다.

科試와 取才 때의 祇迎의 節次도 모두 위와 같은데 掌務書員이 階上에 꿇어서 堂上官이

11) 公服: 官員의 正服으로 冠帶笏佩玉을 함께 着用하는 朝服.

12) 行禮: 禮를 행하는 것.

13) 同品: 品階가 같은 것.

14) 一提調: 上席의 提調.

15) 二提調: 次席의 提調.

16) 正從: 同品이나 正○品, 從○品이 있다.

17) 六行(한)單子: 科擧에 及第한 사람이 謝恩하기 위하여 임금께 바치는 6줄로 된 單子. 여기서는 謝品을 받는 사람의 것을 말한다.

18) 參謁: 毎年 6月과 12월에 官員의 成績을 査定하여 褒貶을 할 때 官員이 그 首官을 찾아뵙는 일. 여기서는 領事에게 行禮하는 것.

19) 西楹: 觀象監 안 內庭의 西쪽에 있는 建物을 말하는 것.

20) 私禮: 非公式의 으로 私事로이 차리는 인사.

21) 時服: 官員이 入侍 또는 公務를 執行할 때 입는 禮服의 一種.

22) 平排坐: 格式을 차리지 않고 便한대로 앉는 것.

23) 祇送: 公경하게 배송하는 것.

謁見을 請함을 告한다. 堂上官이 行禮하면 提調는 舉手하여 答禮한다. 다음에는 兼官의 謁見을 請함을 告하고 또 다음에는 任官, 祿官의 謁見을 請함과 行禮와 答禮를 역시 이와 같이 한다.

- 祿取才²⁴⁾를 만약에 他司²⁵⁾에서 設行하고 提調가 禮曹의 堂上官과 같이 試取할 때는 各學의 差備官²⁶⁾ 外에 堂上官이 祇迎하여 謁見을 請한다. 提調가 없을 때에는 禮曹 郎官²⁷⁾과 같이 試取한다. 즉 堂上官以下가 다만 私現禮²⁸⁾를 行한 後에 禮曹郎官이 堂에 올라서 試取에 參與한다.

祿官의 出勤執務(坐起), 各學의 祿官과 教授 및 訓導는 모두 時服을 입고 會衙한 뒤에 비로소 長官²⁹⁾을 請해 온다. 長官은 正門으로 들어오고 四品 以下는 避한다. 長官이 자리에 가서 祿官中에서 三品官을 지냈던 사람과 한 줄로 次例대로 선다. (時任을 班首로 한다) 相揖禮³⁰⁾를 行한다. 그리고 長官이 主壁³¹⁾에 서고 僉正³²⁾이 東壁에 서고 三品官을 지냈던 사람과 教授, 訓導는 西壁에 선다. 六品 以上이 앞으로 나아가서 揖하고 長官이 答揖한다. 또 東西壁에 대하여 위와 같이 禮를 行한다. 그리고는 西壁에 가서 서로 揖하고 各各 자리를 잡는다. 七品 以下는 앞으로 나아가서 詭拜³³⁾하고 長官은 손을 들어서 答揖한다. 다음에는 東西壁에 나아가서 禮를 行하고 答揖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 물러서서 南行³⁴⁾에게 역시 相揖禮를 行한다. 그리고 제자리에 간다. 掌務書員은 階上에서 꿇고 書員의 禮를 告한다. 여러 書員과 庫直은 階上에서 使令³⁵⁾과 典僕³⁶⁾과 自擊匠³⁷⁾은 階下에서 再拜한다.

聰敏考講³⁸⁾ 坐起에서는 各各의 兼教授, 教授, 訓導가 時服차림으로 官衙에 간다. (天文學 教授가 主試가 된다. 만약 事故가 있으면 天文學訓導가 代行(替行)한다. ○ 聰敏은 곧 靑袍³⁹⁾를 입고 黑靴⁴⁰⁾를 신고 먼저 와서 기다린다) 兼教授는 東壁에, 訓導는 西壁에 諸學의 次例로 자리를 잡는다. (지금 은 또 兼教授, 教授는 主壁에 訓導는 東西壁으로 나누어 앉는 例가 있다) 各學의 聰敏은 南行에서

24) 祿取才: 祿俸이 있는 官員으로 陞進시키기 위한 取材試驗.

25) 他司: 같은 禮曹內의 다른 官廳을 말하는 것.

26) 差備官: 특별한 任務를 맡게 하기 위하여 臨時로 任命한 官員.

27) 禮曹郎官: 禮曹의 正郎 또는 佐郎.

28) 私現禮: 私的인 人事.

29) 長官: 觀象監 實務陳의 長官, 즉 監正을 뜻하는 것 같다.

30) 相揖禮: 서로 揖하는 맞절의 禮.

31) 主壁: 北壁.

32) 僉正: 觀象監 僉正.

33) 詭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

34) 南行: 南쪽의 늘어서는 줄이란 뜻인 것 같다.

35) 使令: 심부름하는 사람.

36) 典僕: 그 官衙 소속의 奴僕.

37) 自擊匠: 自擊漏를 맡아서 時刻을 알리는 사람.

38) 考講: 講으로 試驗하는 것.

39) 靑袍: 푸른 色의 道袍.

40) 黑靴: 黑色의 신발.

一齊히 跪拜한다. 敎授, 訓導는 손을 들어 答揖한다. 聰敏 역시 各學의 次例에 따라서 進講⁴¹⁾한다. (聰敏執綱⁴²⁾ 및 有司⁴³⁾가 考講記⁴⁴⁾를 作成하여 (修正)⁴⁵⁾ 領事와 提調에게 올린다. ○ 舊例로는 三學의 聰敏이 進講하면 地理學, 命課學의 敎授와 訓導는 먼저 나가고 禁漏敎授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다. 禁漏聰敏⁴⁶⁾이 禮를 行하고 進講하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廢했다)

2) 解説

坐衙는 貶坐日에 領事以下 提調 其他 堂上官이 出勤執務할 때에 祇迎과 祇進의 行禮를 記錄한 것이다.

먼저 三學의 堂上官, 堂下官이 會衙하고 提調를 모셔들여서 차례로 人事를 올리고 다음에는 領事を 모셔다가 祇迎의 禮를 올리는데 各各의 品階와 職位에 따라서 자리의 位置와 行禮와 答禮의 方法을 일일이 적고 있다. 여기서 一提調와 二提調의 品階의 差異에 따라 그 자리의 位置와 行禮의 順序가 달랐다는 것이 興味롭다.

다음에는 科試와 取才 때의 祇迎의 節次를 記錄했는데 특별한 경우로 祿取才가 他司에서 行하여질 때 提調와 禮曹 堂上官이 같이 試取하고 提調가 없을 때는 堂上官 등과 禮曹의 郎官이 試取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祿官의 坐起로 觀象監正 以下の 祿官이 出勤執務할 때 三品을 지냈던 사람, 敎授, 訓導와 六品以上者와 六品以下者에서부터 使令, 典僕, 自擊匠에 이르기까지의 全職員의 人事의 節次를 說明한다. 여기서 品階와 身分의 差에 따른 舊時代의 嚴格한 行動規範의 差異를 볼 수 있다.

마지막은 聰敏考講 때의 諸般節次를 記錄하고 있다.

以上の 모든 것은 觀象監에서의 各種 特別行사가 있는 날의 監官들의 上下相互間의 人事 범절과 執務節次의 一部를 記述하여 놓은 것으로 判斷된다. 現代社會와 많이 다른 形式的인 面과 嚴肅했던 當時의 雰圍氣를 느낄 수 있다.

41) 進講: 試驗官 앞에서 講書하는 것.

42) 聰敏執綱: 聰敏取才의 業務를 보는 職責.

43) 有司: 어떠한 단체에 일을 맡아보는 사람.

44) 考講記: 考講의 成績을 記錄한 것.

45) 修正: 修正考講記, 修正單子 등의 말로 보아서 作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46) 禁漏聰敏: 禁漏廳에 소속된 聰敏.